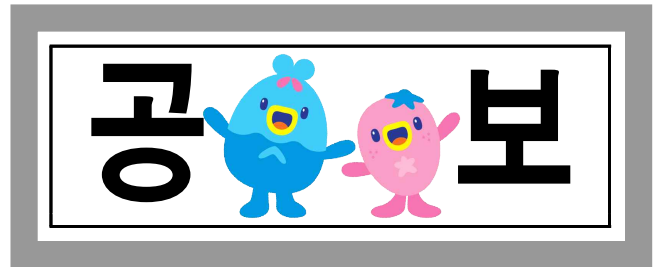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520호 2024년 3월 8일(금)

조 례

-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7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2
- 하천점용허가 고시 17

공 고

-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 공고 18

기 타

-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21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4호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5호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속초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를 따른다.

제7조(비밀의 준수) 지역협의회의 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6호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공유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속초시 및 속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등”이라 한다)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등의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유관기관 및 공유단체 등과의 협력
6. 공공시설 개방 자원 지속 발굴
7.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등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등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단체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등의 추진 사업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등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관기관이나 기업,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4-20호(2024. 1. 30.)로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관광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8일

속 초 시 장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2,578	-	1,332,578	100.0	
계획관리지역	1,332,578	-	1,332,578	100.0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설악한화리조트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32,578	-	1,332,578	1995. 10.2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설악한화리조트 조성 (관광휴양형)지구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32,578	-	1,332,578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1,332,578		1,332,578		
①	골프장 지 구	소 계		834,352		834,352		
		1	체육시설용지	614,752	속초시 장사동 11 일원	613,515	감) 1,237	
		2	녹 지 용 지	219,600	속초시 장사동 산123 일원	220,837	증) 1,237	
	관광 휴양 지구	소 계		498,226		498,226		
		3	숙박시설용지	320,992	속초시 장사동 24-1 일원	326,271	증) 5,279	
		4	관광휴양용지	107,818	속초시 장사동 24-9 일원	107,818		
		5	공공시설용지	50,512	속초시 장사동 24-32 일원	45,233	감) 5,279	
		6	운동·오락시설용지	932	속초시 장사동 24-46, 24-9	932		
		7	녹 지 용 지	17,972	속초시 장사동 24-66 일원	17,972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총 계		1,332,578		1,332,578		
골프장 지구 합계		834,352		834,352		
소계(체육시설용지)		614,752		613,515	감) 1,237	변경
1-1	체육시설	610,742	속초시 장사동 11체	613,515	증) 2,773	변경
1-2	클럽하우스	4,010	속초시 장사동 11체	-	감) 4,010	변경
소계(녹지용지)		219,600		220,837	증) 1,237	폐지
2-1	원형녹지	219,600	속초시 장사동 산123임 외	220,837	증) 1,237	변경
관광휴양지구 합계		498,226		498,226		
소계(숙박시설용지)		320,992		326,271	증) 5,279	변경
3-1	콘도1	69,288	속초시 장사동 24-1대	69,288		
3-2	콘도2	102,795	속초시 장사동 24-39대	102,795		
3-3	콘도3	70,053	속초시 장사동 24-10월	75,332	증) 5,279	변경
3-4	콘도4	78,856	속초시 장사동 24-66대	78,856		
소계(관광휴양용지)		107,818		107,818		
4-1	온천장	80,410	속초시 장사동 24-9대	80,410		
4-2	레이크가든	27,408		27,408		
소계(공공시설용지)		50,512		45,233	감) 5,279	변경
5-1	주차장	17,598	속초시 장사동 24-10월	12,319	감) 5,279	변경
5-2	도 로	24,183	속초시 장사동 24-32대	24,183		
5-3	배수지	5,542	속초시 장사동 24-60임	5,542		
5-4	변전소	3,189	속초시 노학동 1011-60대	3,189		
소계(운동·오락시설용지)		932		932		
6-1	플라잉폭스	932	속초시 장사동 24-46대 외	932		
소계(녹지용지)		17,972		17,972		
7-1	원형녹지	17,972	속초시 장사동 산146임 외	17,972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채색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1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골프장 부대시설	
			건폐율	1.0%이하(2,190.68㎡/614,752㎡)	
			용적율	1.0%이하(2,294.68㎡/614,752㎡)	
			높 이	지상 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회색 / 지붕 : 갈색	
변경	1-1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골프장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건폐율	1.0%이하(4,536.86㎡/614,752㎡)	
			용적율	1.0%이하(6,019.23㎡/614,752㎡)	
			높 이	지하 1층, 지상 2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평지붕	
			색 채	벽체 : 회색 / 지붕 : 옅은 베이지색	
기정	1-2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클럽하우스	
			건폐율	35%이하(1,364㎡/4,010㎡)	
			용적율	88%이하(3,500㎡/4,010㎡)	
			높 이	지상 4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회색 / 지붕 : 갈색	
변경	-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	폐지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정	3-1	속초시 장사동 24-1대	용 도	콘도 1	
			건폐율	20%이하(12,570㎡/69,288㎡)	
			용적율	100%이하(58,813㎡/69,288㎡)	
			높 이	지하 1층, 지상 6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 지붕 : 갈색	
기정	3-2	속초시 장사동 24-39대	용 도	콘도2	
			건폐율	12%이하(11,650㎡/102,795㎡)	
			용적율	64%이하(64,378㎡/102,795㎡)	
			높 이	지하 1층, 지상 7층	
			배 치	도면참조(부대시설 배치변경)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구분	도면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3-3	속초시 장사동 24-10원	용 도	콘도3	
			건폐율	19%이하(11,922㎡/70,053㎡)	
			용적율	106%이하(73,491㎡/70,053㎡)	
			높 이	지하 2층, 지상 15층	
			배 치	도면참조(집합형 1동, 단독형 3동)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 지붕 : 갈색	
변경	3-3	속초시 장사동 24-10원	용 도	콘도3	
			건폐율	22%이하(15,983.52㎡/75,332㎡)	
			용적율	85%이하(63,956.11㎡/75,332㎡)	
			높 이	지하 2층, 지상 9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평지붕	
			색 채	벽체 : 옅은 베이지색	
기정	3-4	속초시 장사동 24-66대	용 도	콘도4	
			건폐율	40%이하(28,375.03㎡/78,901㎡)	
			용적율	100%이하(50,446.72㎡/78,901㎡)	
			높 이	지하 3층, 지상 8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평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 지붕 : 갈색	
기정	4-1	속초시 장사동 24-9대	용 도	온천장	
			건폐율	20%이하(14,860㎡/80,410㎡)	
			용적율	40%이하(27,488㎡/80,410㎡)	
			높 이	지하 2층, 지상 3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 지붕 : 갈색	
기정	5-4	속초시 노학동 1011-60대	용 도	변전소	
			건폐율	20%이하(600㎡/3,189㎡)	
			용적율	20%이하(600㎡/3,189㎡)	
			높 이	지상 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슬라브형 지붕	
			색 채	벽체 : 회색 / 지붕 : 회색	
기정	6-1	속초시 장사동 24-9대	용 도	플라잉폭스(매표소)	
			건폐율	2%이하(7.5㎡/932㎡)	
			용적율	2%이하(7.5㎡/932㎡)	
			높 이	지상1층	
			배 치	1동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갈색 / 지붕 : 회색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속초시장

1. 하천의 명칭		쌍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수위관측소 설치
	개 요	수위관측소 1식, 교량(도문교) 내 레이더 수위계, 수위표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산57-2
	면 적	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3. 5.~2028. 12. 31.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 공고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속 초 시 장

□ 모집분야 및 인원

강사 구분	내용	인원	비고
기본교육 강사	민방위제도,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 담당	1명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강사 수시 교체

□ 위촉기간 : 위촉일 ~ 2024. 12. 31.

□ 자격기준

-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관련분야 전문가
 - 민방위 관련 지식(경보, 훈련, 화생방, 소방, 재난관리 등)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 경력자로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 강사관련 과정 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주소지 지역 제한 없음

☐ 강사 위촉 제한

- 주관적이고 정치·종교 편향적인 강의로 물의를 일으킨 자
- 다수 민원 소지자 및 사회적 물의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5.(화) ~ 3. 13.(수)
- 접 수 처 : 속초시 재난대응과 민방위팀
- 접수방법
 - 가.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직접 방문 제출(평일 09:00 ~ 18:00)
 - 나. 이메일(mj960505@korea.kr) 제출
- 제출서류
 - 가. 이력서 1부
 - 나. 자기소개서 1부
 - 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라. 강의계획서(강의자료 포함) 1부
 - 마. 위촉 동의(서약)서 1부
 - 바. 기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 강의시간 및 강사수당

- 강의시간 : 1일 4시간 교육 중 1시간
- 강의수당 : 시간당 150,000원

☐ 선발방법

- 서류접수 : 2024. 3. 5.(화) ~ 3. 13.(수)
- 서류 및 강의자료 심사 : 2024. 3. 18.(월) ~ 3. 22.(금)
- 합격자 발표 및 위촉장 수여 : 2024. 3. 29.(금) 한 개별통지

☐ 지원자 유의사항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응시자에게 별

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대응과(☎639-2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속 초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3. 4. ~ 2024. 3. 24.(20일간)

4. 행정예고 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5. 설치(예정)장소 및 대수

시 설 명	위 치	설치대수	운영시간	비 고
개소		대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속초시 교동 1025-1	4대(옥외)	24시간	

※ 상기 장소는 현장 상황 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4년 3월 24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 전 화 : 033)639-2422
- 팩 스 : 033)639-2543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